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회



Contents

I . 결산검사 의견서	1
II . 결산검사 결과	5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7
2. 세입의 결산	8
3. 세출의 결산	10
4.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13
5. 예비비의 결산	16
6. 기금의 결산	17
7. 재무제표의 결산	18
8. 성과보고서	19
9. 채권 및 채무의 결산	20
10. 재산의 결산	21
11.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22
12. 금고의 결산	23





III.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25

1. 방배3동 두레마을(997-3번지) 무허가거주 변상금 부과 .. 28
2. 기금운용 업무 개선 30
3.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제고 31
4. 특별회계 예산전출에 대한 권고 34
5. 비과세·감면 조항의 정확한 적용 및 철저한 사후 관리 36
6.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와 처리 현황 38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개선 40
8. 주차장용지 매입 토지 처리방안 강구 42

IV. 참고 자료 45

- 최근 5년 일반회계 집행 잔액 현황 47





I . 결산검사 의견서



결 산 검 사 의 건 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귀하

2018년 5월 1일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감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8년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대 표 위 원	권 영 중	(인)
검 사 위 원	여 재 춘	(인)
검 사 위 원	송 영 주	(인)
검 사 위 원	김 광 수	(인)



Ⅱ. 결산검사 결과



1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695,857,628	719,378,124	591,179,886	128,198,239
일반회계	610,325,333	633,936,072	539,857,878	94,078,194
특별회계	85,532,295	85,442,052	51,322,007	34,120,045

구 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	4,949,143	19,306,235	16,591,245	5,699,645	81,651,971
일반회계	-	4,949,143	18,702,736	16,591,245	5,686,822	48,148,248
특별회계	-	-	603,499	-	12,823	33,503,723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19,378,124천원으로 예산액 695,857,628천원보다 23,520,496천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2.2%인 591,179,886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8,198,239천원임.
- 이중 명시이월비 4,949,143천원, 사고이월비 19,306,235천원 및 계속비 16,591,24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699,64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1,651,971천원임.

2

세입의 결산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처리		비율(%)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다/가	다/나
합계	695,857,628	815,420,604	719,378,124	3,676,552	92,365,928	103.4	88.2
일반회계	610,325,333	696,619,815	633,936,072	3,544,570	59,139,173	103.9	91.0
특별회계	85,532,295	118,800,790	85,442,052	131,982	33,226,755	99.9	71.9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 세입예산현액 695,857,62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9,378,12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 수납액 비율은 103.4%임.
 - 징수결정액 815,420,604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88.2%임.

나. 일반회계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처리		비율 (%)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다/가	다/나
합 계	610,325,333	696,619,815	633,936,072	3,544,570	59,139,173	103.9	91.0
지방세	181,954,036	215,181,329	203,739,356	2,026,706	9,415,268	112.0	94.7
세외수입	97,409,253	150,888,695	99,646,926	1,517,864	49,723,905	102.3	66.0
지방교부세	10,214,000	10,742,398	10,742,398	-	-	105.2	100.0
조정교부금	19,897,104	21,354,762	21,354,762	-	-	107.3	100.0
보조금	170,582,486	168,184,175	168,184,175	-	-	98.6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30,268,454	130,268,455	102,268,455	-	-	100.0	100.0

- 세입예산현액 610,325,33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3,936,07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 수납액 비율은 103.9%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91.0%임.

다. 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미수납액처리		비율 (%)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다/가	다/나
합 계	85,532,295	118,800,790	85,442,052	131,982	33,226,755	99.9	71.9
의료급여기금	306,492	414,930	349,062	-	65,868	113.9	84.1
주차장	85,225,803	118,385,859	85,092,990	131,982	33,160,887	99.8	71.9

- 세입예산현액 85,532,29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442,052천원으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은 99.9%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 비율은 71.9%임.

3

세출의 결산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638,129,364	695,857,628	591,179,886	40,846,623	63,831,119
일반회계	556,100,269	610,325,333	539,857,878	40,243,124	30,224,331
특별회계	82,029,095	85,532,295	51,322,007	603,499	33,606,789

○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은

- 예산액 638,129,364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695,857,628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0%에 해당하는 591,179,886천원이었음. 다음연도이월액은 40,846,623천원으로 명시이월액 4,949,143천원, 사고이월액 19,306,235천원, 계속비이월액 16,591,24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2%인 63,831,119천원임.

나. 일반회계

2017회계연도 분야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금 액	비율(%)
합 계	556,100,269	54,225,064	610,325,333	573,103,466	539,857,878	40,243,124	30,224,331	5.0
일반 공공행정	62,686,485	10,312,724	72,999,209	63,642,822	52,536,380	16,597,461	3,865,367	5.3
공공질서 및 안전	4,250,532	1,200,000	5,450,532	5,203,079	4,865,229	337,750	247,553	4.5
교육	14,376,206	-	14,376,206	13,731,308	13,729,544	-	646,662	4.5
문화 및 관광	23,853,922	5,834,319	29,688,241	28,936,557	20,422,397	8,514,159	751,684	2.5
환경보호	37,386,119	-	37,386,119	35,413,824	35,092,960	320,505	1,972,655	5.3
사회복지	215,161,836	37,770,153	252,931,989	240,293,988	233,978,581	6,125,425	12,827,983	5.1
보건	18,228,986	248,038	18,477,024	16,378,432	16,298,408	80,024	2,098,592	11.4
농림해양 수산	1,681,245	96,869	1,778,114	1,626,580	1,626,580	-	151,534	8.5
산업· 중소기업	364,091	1,000,000	1,364,091	1,294,175	1,294,175	-	69,916	5.1
수송 및 통관	13,753,431	549,907	14,303,338	12,888,218	11,356,999	2,028,790	917,549	6.4
국토 및 지역개발	38,581,771	2,116,454	40,698,225	36,584,961	31,547,102	6,239,010	2,912,113	7.2
예비비	7,543,006	△5,180,774	2,362,232	-	-	-	2,362,232	100
기타	118,232,639	277,374	118,510,013	117,109,523	117,109,523	-	1,400,490	1.2

다. 특별회계

2017회계연도 각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합 계	82,029,095	3,503,200	85,532,295	51,925,506	51,322,007	603,499	33,606,789	39.3
의료급여기금	306,492	-	306,492	294,099	294,099	-	12,393	4.0
주 차 장	81,722,603	3,503,200	85,225,803	51,631,407	51,027,908	603,499	33,594,396	39.4

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내 역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합 계	63,831,120	1,071,897	1,723,830	19,668,450	8,939,879	32,427,064
일반회계	30,224,331	1,071,897	1,606,110	16,466,226	8,838,098	2,242,000
특별회계	33,606,789	-	117,720	3,202,224	101,781	30,185,064

-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3,831,120천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695,857,628천원에 대한 집행잔액율은 9.2%임.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0,224,331천원으로 예산현액 610,325,333천원 대비 집행잔액율은 5.0%임.
-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3,606,789천원으로 예산현액 85,532,295천원 대비 집행잔액율은 39.3%임.

4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2017회계연도에서 발생된 다음연도 이월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695,857,628	40,846,623	4,949,143	19,306,235	16,591,245
일 반 회 계	610,325,333	40,243,124	4,949,143	18,702,736	16,591,245
특 별 회 계	85,532,295	603,499	-	603,499	-

- 2017회계연도 다음연도 이월비는 40,846,623천원으로 명시이월은 4,949,143천원, 사고이월은 19,306,235천원, 계속비이월은 16,591,24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율은 5.9%임.

가. 명시이월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명시이월액	사 업 명
합 계	4,949,143	
일 반 행 정	1,435,840	방배3동청사(기존) 리모델링
지 역 및 도 시	513,303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수 자 원	2,500,000	방배로82 일원 노후하수암거 정비 등
대중교통·물류등기타	500,000	보행자 및 어린이교통안전 시설

나. 사고이월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사고이월액	사 업 명
합 계	18,702,736	
일 반 행 정	2,453,031	쾌적한 구청사 운영, 방배본동청사 리모델링 등
문 화 예 술	1,691,942	반포대로 예술의거리 조성사업, 소규모 공공도서관 설치 등
체 육	6,822,216	원지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노 동	18,000	일자리 안정자금 지자체 이행지원사업
보육·가족및여성	1,174,09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 인 ·청 소년	1,050,665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등
폐 기 물	320,505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지 역 및 도 시	1,935,734	도시유희공간 활용,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
재난방재·민방위	337,750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도 로	1,294,490	남부순환로342길(종터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
수 자 원	1,289,974	새원천 하천정비(단면확장) 사업 등
대중교통·물류등기타	234,300	대중교통 환경개선, 상습정체지역 해소 등
보 건 의 료	80,024	꽃마을보건지소 운영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사고이월액	사 업 명
합 계	603,499	
대중교통·물류등기타	603,499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

다. 계속비이월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계속비이월액	사업기간
합 계		16,591,245	
일 반 행 정	반포3동청사건립(계속비)	3,521,058	2017.01.01~2019.12.31
	서초4동청사건립(계속비)	8,322,273	2017.01.01~2019.12.31
	내곡동청사이전(계속비)	865,250	2017.01.01~2021.12.31
노인·청소년	내곡주민편익시설 건립(계속비)	3,870,993	2013.12.01~2018.03.31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계속비)	11,673	2013.10.01~2019.08.31

5

예비비의 결산

가.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7,543,006	5,180,774	4,996,488	-	184,286
일 반 행 정		3,001,270	2,985,535	-	15,735
체 육		990,000	990,000	-	-
취약계층지원		912,130	745,599	-	166,531
기 타		277,374	275,353	-	2,021

-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은 7,543,006천원, 지출결정액은 5,180,774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996,48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0원, 집행잔액은 184,286천원임.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30,724,636	539,572	-	539,572	-

-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예산은 30,724,636천원, 지출결정액은 539,572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39,572천원, 집행잔액은 0원임.

6

기금의 결산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수납액	지출액	
합 계	198,202,480	14,873,547	25,844,422	10,970,874	213,076,024
통합관리기금	45,344,473	839,197	839,197	-	46,183,670
청사건립기금	100,354,720	2,992,812	2,992,812	-	103,347,532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1,056,683	110,109	519,039	408,930	1,166,792
중소기업육성기금	5,585,527	1,051,655	3,631,655	2,580,000	6,637,182
사회복지진흥기금	404,795	△26,988	10,478	37,466	377,807
사회복지기금	2,415,955	1,059,693	1,084,940	37,266	3,463,628
보육기금	-	5,750,732	8,091,489	2,340,757	5,750,732
양성평등기금	1,900,984	1,082,363	1,168,632	86,269	2,983,347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3,248,491	△221,019	275,277	496,295	3,027,472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562,567	39,345	54,725	15,380	601,9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4,127,739	485,287	485,287	-	24,613,026
옥외광고발전기금	2,244,111	274,741	844,627	569,887	2,518,851
화훼및 농업육성기금	1,429,292	59,689	59,689	-	1,488,981
재난관리기금	5,018,618	1,323,367	1,772,889	449,522	6,341,985
도로굴착복구기금	2,152,773	23,331	3,634,008	3,610,677	2,176,103
식품진흥기금	2,355,752	41,253	379,678	338,425	2,397,004

- 2017년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98,202,480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5,844,422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10,970,874천원을 공제한 213,076,024천원임.

7

재무제표의 결산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정운영결과	
2017년	5,192,253	37,593	5,154,660	493,766	533,943	(40,177)	
2016년	5,088,307	39,809	5,048,498	432,874	427,260	5,614	
증 감	103,946	(2,216)	106,162	60,892	106,683	(45,791)	

○ 2017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 18개 기금(계정 포함) 재무제표 결산내역은

- 순자산 5,154,66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6,162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1%개선되었으며

- 총자산은 5,192,253백만원이고 전년대비 103,946백만원(2.04%) 증가
- 총부채는 37,59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216)백만원(5.57%) 감소

- 재정운영결과¹⁾(총비용 - 총수익)는 (40,17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5,791)백만원으로 감소하였음.

※ 재정운영결과가 음수 ()인 경우에는 투입된 원가보다 수익이 초과함을 표시

1)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지표이지만 정부회계 특히 행정회계에서 재정운영결과는 유입된 자원에서 사용·소모를 나타내는 자원의 절약이나 선사용의 의미임(재정집행결과 성과물로서 나타나는 잉여금의 의미,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8

성과보고서

서초구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7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서초구는 본 회계연도의 ‘열린마음 맑은 행정 행복도시 서초’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38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구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율
계	9	53	138	26	87	25	81.9
의회사무국	1	1	3	0	0	3	0.0
감사담당관	1	1	3	0	1	2	33.3
소통담당관	1	1	3	0	3	0	100.0
행정지원과	1	11	27	7	18	2	92.6
기획재정국	1	8	19	4	12	3	84.2
주민생활국	1	12	31	5	18	8	74.2
도시관리국	1	8	21	3	16	2	90.5
안전건설교통국	1	6	17	4	11	2	88.2
보건소	1	5	14	3	8	3	78.6

9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 권

2017회계연도 채권 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3,327,592	6,075,614	6,129,031	13,274,175
일반회계	7,157,921	800,200	-	7,958,121
특별회계	52,818	39,795	39,408	53,205
기 금	6,116,853	5,235,619	6,089,623	5,262,849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274,175천원으로 2016년말에 비해 총6,129,031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채 무

2017회계연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음.

10

재산의 결산

가. 공유재산

2017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4,241,399,974	192,678,460	53,855,650	4,380,222,784	
행정 재산	소 계	4,195,487,955	186,520,176	40,167,987	4,341,840,144
	공공용 재산	3,347,117,402	135,778,454	39,405,639	3,443,490,217
	공용 재산	848,328,612	50,741,722	762,348	898,307,986
	기업용 재산	-	-	-	-
	보존 재산	41,941	-	-	41,941
일반 재산	45,912,019	6,158,284	13,687,663	38,382,640	

○ 2017년도말 공유재산은

- 토 지 2,753건 3,939,055,254천원
- 건 물 152건 340,484,413천원
- 임목죽 24,978건 541,352천원
- 공작물 5,526건 97,811,603천원
- 지적재산권 23건 260,162천원
- 용익물건 4건 2,070,000천원

총 4,380,222,784천원 상당의 금액이며, 2016년도말에 비해 금액 138,822,810천원 상당이 증가하였음.

나. 물 품

2017회계연도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1,369	364	36	1,697
금액	9,350,897	2,063,710	214,467	11,200,140

- 2017년도말 정수물품은 수량 1,697개, 금액 11,200,140천원으로 2016년도말 대비 수량은 328개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849,243천원이 증가하였음.

11

세입 · 세출외 현금의 결산

2017회계연도 세입 · 세출 외 현금 결산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A+B)
		계 (B)=(C-D)	증가액 (C)	지출액 (D)	
합 계	4,144,996	4,893,868	25,481,901	20,588,033	9,038,864
보증금	384,413	△364,992	429,627	794,619	19,421
보관금	2,879,491	2,751,204	18,594,567	15,843,363	5,630,695
잡종금등 기타	881,092	2,507,656	6,457,707	3,950,051	3,388,748

- 2017년도말 세입 · 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9,038,864천원으로 2016년도말의 4,144,996천원에 비하여 4,893,868천원이 증가하였음.

12

금고의 결산

2017회계연도 금고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 회 계 별	세입 결산액 ㉞	세출 결산액 ㉟	잔액(금고보관액) (㉞ - ㉟)
합 계	719,378,124	591,179,885	128,198,239
일 반 회 계	633,936,072	539,857,878	94,078,194
특 별 회 계	85,442,052	51,322,007	34,120,045

- 서초구금고(우리은행 서초구청지점)에서 통보된 2017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되었음.



Ⅲ.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목록

연번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소관부서
1	방배3동 두레마을(997-3번지) 무허가거주 변상금 부과	자치행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2	기금운용 업무 개선	기획예산과 해당부서
3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제고	기획예산과 해당부서
4	특별회계 예산전출에 대한 권고	기획예산과 주차관리과
5	비과세·감면 조항의 정확한 적용 및 철저한 사후 관리	재산세과
6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와 처리 현황	청소행정과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개선	주거개선과
8	주차장용지 매입 토지의 처리방안 강구	주차관리과

1 방배3동 두레마을(997-3번지) 무허가거주 변상금 부과

1) 현황

방배3동 두레마을에는 현재 30여 가구가 무허가촌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음. 두레마을의 총 면적은 5,000㎡로 구유지 2,876㎡, 도서관용지 342㎡, 공원용지 1,782㎡임.

서초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들 가구에 대하여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최근 3년간의 변상금 부과 및 징수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소관부서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자치행정과 (24가구)	부과	73,560	71,775	77,212
	징수	27,722	13,270	11,107
	체납	41,987	58,505	66,105
도시계획과 (3가구)	부과	10,701	11,855	11,274
	징수	2,446	1,819	4,376
	체납	9,432	13,325	11,528

* 체납액은 가산금이 포함됨

변상금 부과 소관부서는 구유지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민행정과(現 자치행정과), 도서관용지에 거주하는 가구는 도시계획과, 공원용지에 거주하는 가구는 공원녹지과로 각각 다름. 또한 변상금은 거주면적 크기에 따라 다르며 완납한 세대, 일부만 납부한 세대, 완전미납 세대 등 다양함.

2) 문제점

- ① 공원녹지과 소관인 무허가 몇 가구에 대하여는 변상금의 부과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②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므로 생활 형편 상 변상금을 납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추측은 할 수 있으나, 변상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불공평하며 납부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됨.

3) 개선사항

- ① 공원녹지과는 미 부과한 변상금에 대하여 즉시 부과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 ② 두레마을은 앞으로 철거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 상당한 금액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음. 체납자들의 재산 파악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체납액은 결손처분하지 말아야 할 것임. 서초구는 압류할 재산이 없는 가구에 대하여는 2011년도분 체납액까지 이미 결손처분 한 상태임.

2**기금운용 업무 개선****1) 현황**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는 다음 3개항을 규정하고 있음.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서초구는 2017년도 말 현재 일반회계 세입총액(6,339억원) 대비 기금총액(2,131억원)의 비율이 33.6%로서 전국지자체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고, 기금 수 역시 18개로서 전국지자체와 비교하여 월등히 많음.

2) 문제점

기금 18개 중에서 2017년도 중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10억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246억원), 화훼및농업육성기금(15억원)이며, 특히 통합관리기금은 조성액이 461억여원에 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기금설치 이후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전무함.

3) 개선방안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서울 25개 지자체 중 설치한 구가 14곳, 설치안한 구가 11곳임. 서초구의 통합관리기금은 그 금액이 과다하므로 상당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에 이전하여 필요불가피한 사업에 충당하든지, 아니면 18개의 기금을 통폐합하여 기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제고

1) 개념

성과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전, 시정방침, 방향 및 전략목표 설정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환류)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성과관리체계는 부서별로 전략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여러 정책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목적달성 과정과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들을 적절히 평가해서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임.

따라서 성과계획은 성과관리체계의 논리적 적합성 즉, 「미션→비전→전략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상하위 목표들이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예산 체계와 일치하도록 수립되어 예산투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재정활동의 성과, 즉 실적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은 전략목표의 달성정도와 달성노력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또 달성 목표는 수행기관의 달성노력과 성과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함.

2) 문제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예산편성 등 재정운영에 필요한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①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성과지표의 연계성 미흡

일자리경제과(現 지역경제과)의 경우 전략목표를 ‘창조경제 선도와 일자리 창출로 행복서초구현’으로 설정하고 정책사업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초 조성’으로 설정하고서 이에 따른 성과지표는 ‘해외시장 개척단 상담실적과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자 상담실적'으로 정책목표에 미흡한 지표가 설정되었음.

② 성과지표의 정책사업목표 달성도 및 달성노력 측정 어려움

문화체육관광과(現 문화예술과)의 정책사업목표를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으로 하고 성과지표를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지정문화재 시설보호를 위한 CCTV와 소화기 설치'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으로 전통문화보존 및 전승에 대한 성과측정은 어렵다고 보여짐.

③ 성과목표 또는 관리체계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 파악이 어려운 성과지표 설정
사회복지과의 경우 정책사업목표로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으로 설정하여 목표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로 '장애인 만족도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책정하여 장애인의 복지관 이용자수로서 성과여부를 측정하였는데 정작 필요한 장애인의 만족도에 관한 지표는 설정도 측정도 하지 않았음.

여성보육과의 경우도 '영유아의 건강한 육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관내 운영 중인(운영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수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수'를 목표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으나 관내 전체 영유아 수와 어린이집 등의 수용 가능 범위에 대한 비율을 지표로 설정함이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됨.

④ 성과지표의 목표 적정성

상위전략목표 또는 정책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대표성이나 중요성이 낮은 목표를 설정한 경우로 주민행정과(現 자치행정과)의 경우 정책사업목표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설정하고 성과지표는 '도서관 회원 수 및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평가했는데 도서관 확충을 설정지표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됨.

⑤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문제

청소행정과는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를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로 폐기물의 효율처리'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성과지표는 '생활폐기물 5%감량과 음식물 폐기물

주민 1인당 배출 5%감량'으로 전년도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반입량과 음식물폐기물 청소종합시설 반입량 대비 5%감량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는데 목표치 대비 실적치를 계산하면서 실제로 감량여부를 측정하지 않고 100% 달성한 것으로 표시하여 보고서의 성과를 신뢰할 수 없게 작성되었음.

3) 개선의견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성과보고서는 투입예산과 관련하여 성과목표와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임. 성과보고서는 체계적으로 기술한 성과계획서에 의하여 성과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성과결산서로서 성과결과는 일반국민에게 공개되며 예산편성의 분석자료로 활용되므로 목표달성의 노력과 성과가 표시되도록 지표설정과 평가에 있어 적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뢰성 있게 작성되어야 할 것임.

4

특별회계 예산전출에 대한 권고

1) 현황

서초구는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일반예산에 전출하여 일반회계의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부 서	지급명령내용	지급액	지급일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전출금	28,000	2017. 2. 6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독립된 회계 실체로서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다 하더라도 회계상으로는 타인과의 거래와 같이 별개이며, 특히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각각의 고유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그 수입이나 지출은 일반회계와 혼용하여 집행하거나 임의로 일반회계에 자금을 전출입해서는 안됨. 만약 이를 허용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없게 됨.

2) 문제점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수입의 대부분이 구 소유 주차시설에 대한 주차요금(위탁수익금 포함)과 불법주정차 등에 대한 과태료로서 그 잉여금은 주차공간의 확보와 주차시설의 유지관리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임. 서초구 관내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예산에까지 전출하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본래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초래되리라 예상됨.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당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계간 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음.

또 위의 전출금 정도의 금액은 아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산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까지 3년간 매년 400억원 내외의 금액이 발생하여 예산전출 없이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었으며, 또 통합관리기금 잔액도 2017년말 현재 461억원 조성되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됨.

<일반회계 결산 내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세입결산액	633,936	540,746	473,579	417,315	371,638
세출결산액	539,858	438,477	392,272	357,667	351,279
결산잉여금	94,078	102,268	81,307	59,648	20,359
보조금 등 이월액	45,930	59,032	38,487	20,697	8,329
순세계잉여금	48,148	43,237	42,820	38,951	12,030

3) 권고사항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전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전출하였으나 특별회계 설치 목적상 배치되는 것으로 이후로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전출은 지양해 주시기를 권고함.

5

비과세감면 조항의 정확한 적용 및 철저한 사후 관리

1) 현황

직전 3개년도간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대상 금액 및 건수와 비과세·감면 요건이 미비되어 추징한 건수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건, 천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과세·감면 금액	건수	40,810	39,675	46,975
	금액	90,472,132	90,362,252	95,568,635
요건 미비 추징액	건수	94	251	274
	금액	709,797	647,264	43,422

2017년도의 경우 지방세에서 비과세와 감면 받은 건수와 금액은 4만건에 9백억 원이었으며 과거연도 비과세·감면 대상이었으나 요건 미비로 추징한 건수는 94건에 7억정도임.

2) 문제점과 권고사항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감면 조항에는 요건에 해당되면 법이 정한 적용시기까지는 재산세 등등을 계속 비과세·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음. (예 :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학술연구·장학단체등에 대한 감면, 도로, 하천, 구거, 묘지에 대한 비과세, 종교, 제사에 대한 비과세 등)

세수에 영향이 큰 비과세·감면 조항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 이후에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요건이 미비되어도 계속적으로 비과세·감면 받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확인이 필요함.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조항은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공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므로 요건에 해당되는 납세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도록 적극 안내하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적시에 추징하여 세수의 일실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6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와 처리 현황

1) 현황

대형생활폐기물(가구, 사무용기자재, 생활용품 등) 의 수거 업체와 수거 금액은 아래와 같음.

<대형생활폐기물 수거 현황>

(단위 : 원/처리량(톤))

업체/연도	2017년	2016년	2015년
하동	242,852,400/16,527	196,858,550/13,156	147,914,400/9,981
고려	112,818,000/6,454	97,024,500/4,899	90,708,500/4,342
대승	189,856,240/10,008	174,486,000/9,028	134,743,500/7,728
성광	100,170,000/5,862	78,341,000/5,173	76,235,900/4,953
성진	119,325,000/8,825	143,017,000/11,621	57,812,500/4,810
합계	765,021,640/47,676	689,727,050/43,877	507,414,800/31,814

2) 문제점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등을 수거. 처리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잡고,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비용을 지출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구의 수입으로 잡지 않고 위의 업체들이 직접 대금을 징수하므로 지출로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있음.

대형폐기물 수집의 수입 처리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등)에 따르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집·운반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단,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관리자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폐기물의 수집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제24조(수수료의 세입처리)에 따르면 ‘폐기물수수료 등은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3) 권고사항

지난 3년간 수집건수와 수집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업체에 맡기는 위탁비는 별도로 비용처리 하도록 하여 정확한 수입과 지출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음.

7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개선

1) 현황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및 징수결정액>

(단위 : 건/천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비고
징수건수	2,164	1,731	1,608	
징수결정액	2,647,014	1,868,976	1,832,687	

※ 2017년의 경우 3년째 계속 위반하고 있는 건수 : 1,320건
 (2017년 전체 징수건 중 3회 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건수 비율 61%(1,320건/2,164건))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 상위 10개 지역>

(단위 : 건)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지역	건수	지역	건수	지역	건수
1	방배4동	380	방배4동	281	방배4동	284
2	방배1동	252	방배2동	183	방배2동	162
3	방배2동	230	방배1동	182	방배1동	137
4	양재2동	192	서초3동	146	방배본동	134
5	서초3동	185	양재2동	132	서초3동	129
6	양재1동	147	양재1동	132	양재2동	125
7	방배본동	143	방배본동	130	반포1동	102
8	반포4동	118	반포4동	102	양재1동	98
9	반포1동	116	반포1동	100	반포4동	93
10	서초1동	99	서초1동	83	서초1동	86
11	기타지역	583	기타지역	453	기타지역	355
합계		2,445		1,924		1,705

2) 문제점

2017년도의 징수 건수 중에 3년간 계속 위반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61%(1,320건/2,164건) 이상이 됨. 또한 위반건축물 상위 10개 지역도 지난 3개년 간 유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위반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이득(임대료 등)이 이행강제금보다 크기 때문이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법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임.

3) 권고사항

위반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강제금의 부과 요건 및 강제금 부과액의 현실화도 중요하겠지만 안전불감증이 만연하여 법을 지키는 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반자들을 적극 찾아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계도와 계몽이 함께 이루어져 개선의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8

주차장용지 매입 토지 처리방안 강구

1) 현황 및 문제점

서초구가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이용코자 관내의 개발제한 구역내에 토지를 매입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못해 일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토지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해당토지 현황>

위 치	면 적	주차장 사용면적	매입시기	매입금액	현재이용상황
신원동 225번지외 11필지	11,979㎡ (3,623평)	990㎡ (300평)	2009년	8,453백만원	텃밭으로 임대
방배동 2911번지외 4필지	3,733㎡ (1,129평)	0	2001년	1,295백만원	도로과 제설기지 및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위 토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용지로 매입하여 보유중인 토지로 신원동 토지의 경우 일부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텃밭으로 임대중이고, 방배동 토지는 서초구 도로과의 제설기지 창고와 고엽제전우회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 주차장 사용승인을 구하였으나 인근의 택지개발 지구의 주차시설과 중복 또는 사당동 환승센터 계획과 중복투자로 하여 불허되었음. 주차장 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처분(매각)하여 대체 토지를 구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주차장특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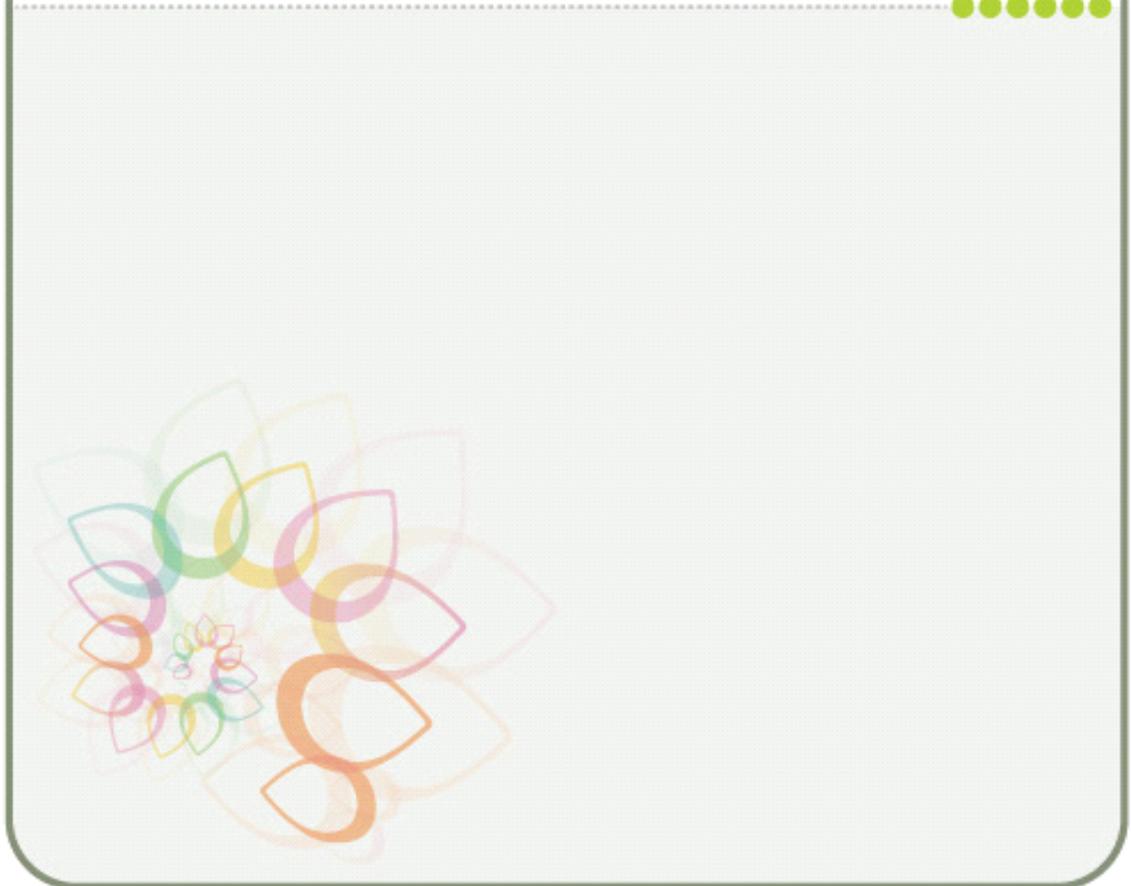
계 잉여금은 모두 주차위반 범칙금과 주차료에서 생긴 잉여금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2) 권고의견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처분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됨.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목적에도 맞지 않고 재산의 활용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개발할 수없는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 토지투기의 오해소지도 있으니 조속히 본래의 회계로 환원할 것을 권고함.



IV. 참고 자료



최근 5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비비	비 고 (예산현액)
2017년	30,224	1,072	1,606	16,466	8,838	2,242	610,325
2016년	29,721	1,903	1,178	15,489	8,292	2,857	522,423
2015년	34,675	778	1,649	16,520	8,971	6,757	456,469
2014년	30,834	2,524	4,232	14,854	2,290	6,934	406,891
2013년	28,225	2,610	1,555	17,316	2,828	3,916	385,005